

오픈뱅킹서비스 이용약관

2026.06.30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제주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오픈뱅킹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과 이용자 간의 권리 및 의무,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조건,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오픈뱅킹서비스”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활용하여 은행이 이용자에게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총칭합니다.
2. “이용자”란 본 약관에 의하여 은행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14세 이상의 자를 말합니다.
3. “지급인”이란 출금계좌의 명의인을 말합니다.
4. “수취인”이란 입금계좌의 명의인을 말합니다.
5. “신청계좌”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연결하는 계좌로서 오픈뱅킹공동업무에 등록이 가능한 계좌를 말합니다.
6. “입금계좌”란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말합니다.
7. “계좌이체”라 함은 지급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지급지시에 따라 은행이 지급인의 신청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은행 또는 다른 은행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8. “추심이체”라 함은 수취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추심지시에 따라 은행이 지급인의 신청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은행 또는 다른 은행의 계좌(계정 포함)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운영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운영·제공하는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을 말합니다.
10.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은행이 다른 은행과 별도 제휴 없이 운영기관을 통하여 API형태로 운영·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합니다.
 - 가. “출금이체”란 은행의 출금에 동의한 이용자의 신청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은행의 수납계정 또는 계좌로 실시간 입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나. “입금이체”란 은행의 지급계정 또는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수취인의 계좌로 실시간 입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다. “잔액조회”란 이용자가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계좌의 잔액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라. “거래내역조회”란 이용자가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계좌의 거래내역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마. “계좌실명조회”란 은행이 수취인 또는 출금이체 신청을 한 이용자 계좌의 정상여부 및 실명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바. “카드목록조회”란 이용자가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보유한 카드목록 등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사. “카드기본정보조회”란 이용자가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보유한 카드별로 기본정보 및 연계된 결제 계좌정보 등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아. “카드청구기본정보조회”란 이용자가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청구금액 및 결제일 등 월별 청구 정보를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자. “카드청구상세정보조회”란 이용자가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청구금액에 대한 카드이용내역 등 월별 청구 상세정보를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11. “모바일기기”란 LTE, 5G 등 이동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폰, 스마트폰, 태블릿 PC등의 기기를 통칭합니다.

12. “전용 어플리케이션”이란 서비스 이용을 위해 모바일기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말하며,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가. “은행 어플리케이션”은 은행이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서비스 가입 시 본 약관이 적용됩니다.

나. “제휴업체 어플리케이션”은 제휴업체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제휴업체 어플리케이션의 약관과 별도로 제휴업체 어플리케이션 내에 은행의 서비스 등록 시 본 약관이 추가적으로 적용됩니다.

13. “비밀번호”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이용자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은행이 승인한 숫자의 조합, 숫자와 문자의 조합으로서 PIN을 포함합니다.

14. “PIN”이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본인 확인 및 식별, 거래 승인을 위하여 직접 설정하고 전용 어플리케이션에 직접 입력하는 숫자와 문자의 조합 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15. “수수료”란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은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16. “제휴업체”란 은행과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제휴업체 어플리케이션에 은행의 서비스를 연동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17. “오픈뱅킹 관련 차단 서비스”란 오픈뱅킹을 이용한 명의도용 금융사기 피해예방 및 오픈뱅킹 거래를 이용하지 않을 소비자 권리 확보를 위해 고객이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대한 오픈뱅킹을 사전차단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적용 및 변경)

① 은행은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전용 어플리케이션 화면 내 또는 별도로 영업점 혹은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② 은행은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내용을 준용합니다.

제4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은행은 개별서비스에 적용될 사항의 규정을 위해 개별약관을 사용하거나 이용정책을 구분하여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상충되는 경우 개별서비스에 대한 개별약관 및 이용정책을 우선 적용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등 관련 법령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우선 적용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것은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2 장 이용약관】

〈제 1 절 이용약관의 체결 및 해지〉

제5조 (이용계약의 체결)

- ① 은행과 이용자 사이의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이용계약"이라 함)은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라 함)가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은행이 정한 양식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고 은행이 이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 ② 가입신청자가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동의 의사를 은행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게 되면 본 약관에 동의하고 은행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은행은 가입신청자의 가입신청이 제7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④ 은행은 은행정책에 따라 이용자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제6조 (추심이체의 동의 및 철회)

- ① 이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은행이 제공하는 방식과 요건에 의한 전자서명으로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자는 은행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 원장에 출금기록이 기입되기 전까지는 은행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③ 이용자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에 연결된 신청계좌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전 2항의 출금이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이용계약의 해지)

- ①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용약관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은행은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약관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③ 은행은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이용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과거에 본 약관을 위반하여 서비스 이용약관을 해지당한 경우
 2. 타인의 정보를 이용한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은행이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이용자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방해하거나 시도하는 경우
 5. 이미 가입된 이용자가 중복하여 가입신청 하는 경우
 6. 다른 이용자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대한민국 법령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7. 기타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 ④ 은행은 이용약관을 해지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해지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사전에 통지하며, 이용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약관 및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이의 신청 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2 절 이용자〉

제8조(이용자에 대한 통지)

- ① 은행이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SMS, LMS, 전자우편, 서면 등 가용한 수단을 활용하여 통지합니다.
- ② 은행은 이용자 전체에 대하여 공지사항 등을 안내하는 경우 홈페이지, 모바일 전용 어플리케이션 등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제9조(이용자 정보의 제공 및 변경)

- ① 은행은 이용계약 체결 이후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이용자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는 은행에 제공한 회원정보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온라인으로 수정하거나 은행에 알려야 합니다. 이용자가 변경사항을 은행에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제8조에 의한 통지가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 3 장 서비스】

제10조 (서비스의 제공)

- ① 제5조에 따라 은행이 가입신청자의 이용신청을 승낙함과 동시에 가입신청자는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자가 되며, 이때부터 은행은 이용자에게 본 약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② 은행은 본 약관이 정한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별도의 추가적인 약관 동의,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등 절차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추가적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③ 이용자의 오픈뱅킹 관련 차단 서비스 신청 등으로 인해 금융회사로부터 금융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의 종류)

은행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조회서비스 : 신청계좌의 거래내역, 잔액, 이용자 본인의 카드목록, 카드 기본정보, 카드 청구 기본정보, 카드 청구 상세정보 등을 조회하는 서비스로 조회 가능 정보는 운영기관에서 정합니다.
- ② 금융거래서비스 : 신청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이체, 상품신규 등 은행을 통해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③ 기타 은행이 정한 서비스

제12조 (이체대상 및 출금한도)

- ① 출금이체 및 입금이체의 이체대상은 현금으로 합니다.
- ② 이용자의 출금이체의 일일 이용한도는 운영기관에서 정하는 한도로 합니다.
- ③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의한 신청계좌에서의 출금이체는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에 한하여 거래지시대로 출금합니다. 단, 이용자의 신청계좌의 예금잔액이 출금일 현재 거래지시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출금이체 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 (인증)

- ① 이용자는 본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은행이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은행은 서비스의 종류 및 보안 수준에 따라 별도의 인증수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 인증수단 등 인증방법은 은행이 정한 방법에 의합니다.
- ③ 이용자는 본인 인증수단을 철저히 관리하고,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4조 (서비스의 중단)

-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1. 운영기관의 시스템 점검시간
 - 2. 서비스 점검, 변경 등 운영상의 필요
 - 3.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증설, 교체, 이전 등 시스템 관리 업무
 - 4.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5. 은행이 정한 서비스 제공환경이 아니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6. 기타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해킹, DDOS,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서비스는 관련 법령,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은행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제휴업체 등의 시스템 운영 상황이나 계약 체결 상황에 따라 서비스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체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은행은 사전에 서비스 중단을 공지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전 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이를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수수료】

제15조 (수수료)

- ① 은행은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전용 어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 등에 별도로 게시합니다.
- ③ 은행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의 변경 시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전용 어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 등에 별도로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이용자는 수수료에 관한 변경내용이 통지된 후부터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수수료에 관한 사항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 5 장 준수사항】

제16조 (준수사항)

- ① 은행은 서비스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업무 목적 외에 누설 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 ② 은행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출금이체 처리 후 수취인의 계좌로 입금이체 처리 완료한 거래에 관련하여, 이용자의 착오로 송금

금액, 수취기관,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하였음을 은행에게 통지하는 경우 은행은 해당 자금의 청구 및 반환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약관, 세부 이용지침, 서비스 이용안내 및 은행이 통지한 공지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1.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2. 타인의 명의, 신용카드정보, 휴대폰 정보, 계좌 정보 등을 도용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3.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결제를 하는 행위
4. 은행이 게시한 정보의 무단 변경 또는 은행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하는 행위
5. 은행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
6. 은행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은행의 정보를 은행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8.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9.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10. 은행의 서비스를 해킹하거나 해킹에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
11. 구매의사 없이 반복적인 결제를 발생시키는 행위
12. 접근매체의 대여나 양도·양수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13. 제휴업체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자신의 모바일기기를 제3자가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14.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④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은행에 통보해야 합니다.

1.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2. 제휴업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이용 중인 모바일기기 및 USIM 칩 등의 분실, 도난
3. 접근매체의 훼손,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4. 본인 인증수단 등이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⑤ 은행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 이용을 정지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이용자가 본 약관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않습니다.

제17조 (손해배상 및 면책)

은행과 이용자 간의 손해배상 및 면책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손해배상 및 면책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8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 ① 본 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 ②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 칙

본 약관은 2019. 10. 28. 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본 약관은 2021. 02. 19. 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본 약관은 2025. 11. 14. 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본 약관은 2026. 06. 30. 부터 시행합니다.